[별표 2]

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

1. 폐합성고분자화합물(폐합성수지, 폐합성고무, 폐전선 등)
2. 오니류
3. 광재류
4. 분진
5.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
6. 소각재(비산재, 바닥재)
7.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
8.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(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)
9.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
10. 폐페인트 및 락카
11. 폐동식물유
12. 폐석고 및 폐석회류
13. 연소잔재물(석탄재 등)
14. 폐석재류
15. 폐타이어
16. 폐식용유
17. 동식물성잔재물(동물의 사체, 동물성잔재물, 식물성잔재물 등)
18. <삭 제>
19. 왕겨 및 쌀겨
20. 폐목재류
21. 폐토사류
22. 폐주물사 및 폐사
23. 폐섬유
24. 폐금속류
25. 폐유리
26. 폐지류
27.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(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)

비고 : 1.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.

2.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

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. 단,「폐기물관리법」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·연구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.

3. 「폐기물관리법」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, 비철금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.(단,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,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)

4. <삭 제>

5.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」에서 규정한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.

6. 제27호는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「OECD 회수가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에 관한 이사회 결정문」 GC010(금속 또는 합금으로 구성된 전기 조립품)과 GC020(전자 스크랩(예 : 인쇄회로기판, 전자 부품, 전선 등)과 비철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부품)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.